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실용신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허출원인·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완화된 회복요건을 반영(안 제6조의2)

회복요건을 천재지변에 의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출원인 등을 구제하고 등록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도 명확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거목 중 “책임질 수 없는”을 “정당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p> <p>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하.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거.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u>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u>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날까지의 기간</p> <p style="padding-left: 20px;">너. ~ 어. (생략)</p> <p>2. ~ 4.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 ----- ----- ----- ----- ----- 1. ----- ----- ----- ----- 가. ~ 하. (현행과 같음)</p> <p>거. ----- ----- ----- <u>정당한</u> ----- ----- ----- ----- ----- ----- ----- ----- ----- 너. ~ 어.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8153